제 22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5월 0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박**	박** 1979-12-29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	무단전출
배**	배** 1966-09-07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	무단전출
박**	박** 1960-04-20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	무단전출
맹**	맹** 1989-05-25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	무단전출
고**	고** 1983-05-11	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구 성서 문의전화 : 032-560-3259)

2016년 04월 27일

검단1동장 인